



## 농협중앙회 회장 원철희씨, 수협중앙회 회장 이방호씨 각각 당선

농협 및 수협의 민선 2기를 맞는 회장 선거에서 농협은 23일 임시총회에서 전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던 원철희 후보가 63.1%의



△수협중앙회 이방호 회장

- 학력 및 주요경력
- △연세대 법학과 졸업
- △삼천포 수협 조합장(4선)
- △한려제빙냉동(주) 대표이사
- △수협중앙회 비상임 감사
- △현 수협중앙회 회장



△농협중앙회 원철희 회장

### •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농림수산부 차관 비서관
- △농협중앙회 비서실장
- △새마을 지도부장
- △충남도지회장
- △청와대 경제비서관

지지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수협도 19일 임시총회에서 이방호회장을 92.5%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재선출하여 그간 선거열기로 들뜬 분위기에서 생산자들의 권익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체제정비에 들어갔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증 개정령(안) 의 견 수렴

농림수산부는 지난 14일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증 개정령(안)(위생 67430-286)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7조와 관련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제20조의 2항과 관련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을 축산시설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증 개정령(안) 중 닫에 해당하

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별표4의 2)

·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 축산시설(제20조의 2 관련)

| 시설의 종류   | 규모   |
|----------|--|
| 돼지사육시설   | 면적 70m <sup>2</sup> 이상 250m <sup>2</sup> 미만            |
| 소사육시설    | 면적(운동장면적 포함) 120m <sup>2</sup> 이상 300m <sup>2</sup> 미만 |
| 말사육시설    | 면적(운동장면적 포함) 120m <sup>2</sup> 이상 300m <sup>2</sup> 미만 |
| 닭·오리사육시설 | 면적 150m <sup>2</sup> 이상 500m <sup>2</sup> 미만           |
| 양사육시설    | 면적 150m <sup>2</sup> 이상 500m <sup>2</sup> 미만           |

(별표 2)

·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제 7 조 관련)

| 시설의 종류   | 규모   |
|----------|--|
| 돼지사육시설   | 면적 250m <sup>2</sup> 이상 700m <sup>2</sup> 미만           |
| 소사육시설    | 면적(운동장면적 포함) 300m <sup>2</sup> 이상 600m <sup>2</sup> 미만 |
| 말사육시설    | 면적(운동장면적 포함) 300m <sup>2</sup> 이상 600m <sup>2</sup> 미만 |
| 닭·오리사육시설 | 면적 500m <sup>2</sup> 이상                                |
| 양사육시설    | 면적 500m <sup>2</sup> 이상                                |

비고 : 동일 사업장내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면적을 합산한 것을 당해 시설의 규모로 한다. 다만, 다른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의 합이 1이상이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본다.

제1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  
해당 축산폐수시설의 기준면적

제2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  
해당 축산폐수시설의 기준면적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

|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
| 제 8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면제대상)<br>이 되는 경우 등) ① | 제 8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면제대상)<br>이 되는 경우 등) ① |      |
| 법 제25조 제1항 단                           | 법 제25조 제1항 단                           |      |

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재 활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폐수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면제대상에 축산폐수재 활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폐수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함  
○용어정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에 축산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설)

제20조의 2(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대상지역 및 규모) 법 제3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고, 그 설치대상 축산시설은 별표 4의 2와 같다.

1. 수도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취수시설로부터 유수거리 10 키로미터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광역상수원인 경우에는 유수거리 20키로미터이내의 상수원 상류지역)  
2. 수질환경보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수 수질관리구역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대상 지역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동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 UR재협상시 이행계획서 수정제출에 따른 성명서 발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최근 UR협상 타결과 관련하여 “미국에 대응하여 이행계획서를 즉각 수정제출하라”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다 음—

### 성명서

미국에 대응하여 이행계획서를 즉각 수정제출하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은 UR협상 내용과 다르게 공산품의 이행계획서를 GATT에 수정제출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국민에게는 비밀로 하면서도 미국에 사전 공개한 사대주의적, 작태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UR협상 이후 쇠고기, 유제품 등 주요 기초 농산물의 재협상을 생존권 차원에서 간곡히 호소해왔으나, 정부는 UR은 이미 지난해 12월로 타결되었음을 선언하면서 농민의 UR재협상 요구는 국제고립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호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구가들은 UR재협상을 이미 추진하였고, 특히 미국은 UR협상을 어기고 자국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공산품의 이행계획서를 수정제출하였다

면, 우리나라가 UR협상에서 가장 심각한 농산물 분야는 산업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재협상으로 대응해야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이회창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다른 나라가 재협상시 우리도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서도 미국의 기만행위에 대해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입장은 없으니 정부의 농업 포기의 사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쇠고기의 협상결과대로는 국내의 한우존립이 절대 불가능하고, 낙농 역시 마찬가지다. 쇠고기는 반드시 재협상하여 관세상당치 조건으로 개방하고, 유제품은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조건이 되도록 즉 적정관세와 부과금 징수로 국내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낙농육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 정부 임무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재협상 추진없이는 농축산업을 지킬 수 없음을 밝힌다. 구호로만 농업을 지키겠다고 정치적인 홍보에 치중하지 말고, UR재협상으로 정부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지킬 수 있고, 농민의 정부 불신을 잠재울 수 있다.

1994. 3. 4

전국농민단체협의회

## 농산물 개방 최종 이행계획서 수정

농림수산부는 지난 25일 제네바에서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과의 양자협상과 다자간 검증 등을 거쳐 우리측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을 대폭 수정, GATT에 최종 제출한 바, 지난 11일 GATT에 제출한 당초 이행계

획서 비해 △국영무역을 통한 부과금대상이 21개 품목이 제외됐고 △34개품목의 종량세 부과방침이 철회됐으며 △3백85개 품목의 관세가 낮아졌는데 농산물 개방이행계획서 내용 및 품목별개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농산물 개방이행계획서 내용

| 시기 구분           | 92. 4 | 93. 12                   | 94. 3         | 최종(3.25) |
|-----------------|-------|--------------------------|---------------|----------|
| 개방품목수           | 1,269 | 129<br>(쌀등 15개<br>기초농산물) | 1,312         | 1,312    |
| 종량세             | 2     | 11                       | 97            | 63       |
| 국영무역<br>(마크업)   | 0     | 0                        | 118           | 97       |
| 한도양허<br>(실링바인딩) | —     | —                        | 102           | 71       |
| 관세율인상           | —     | —                        | 354<br>(92대비) | (원상대로)   |

### 농산물 품목별 개방 내용(품목수)

| 구 분        | 반영 품목   | 철회 품목  |
|------------|---|--|
| 국영무역       | 쇠고기, 갑자, 녹두, 팥, 콩, 땅콩, 인삼, 인삼제품, 고구마, 보리, 쌀, 찹쌀, 메밀, 밀, 양파, 고추, 마늘, 잣, 오렌지, 감귤류, 생강, 참깨, 율무(97) |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버터, 밤, 대추, 녹차, 참기름, 땅콩조제품, 누에고치, 생사(21)         |
| 종량세        | 꿀, 양파, 마늘, 버섯류, 고추, 고사리, 오이, 무, 당근, 호박, 고구마, 보리, 콩, 참깨, 참기름, 도토리, 누에고치, 생사(63)                  | 분유, 갑자,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자몽, 포도, 사과, 배, 키위, 복숭아, 포도주스, 사과주스(34) |
| 한도양허(관세화대) | 당근, 무, 버섯류,   | 양란, 토마토, 감자, 채소류, 바나나, 파인애플, 배, 복숭아, 자몽, 한약재, 마늘, 생강(31)       |

|                                      |                                    |  |
|--------------------------------------|------------------------------------|--|
| 상이 아닌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매긴뒤 이행기간내 관세율 감축) | 양파, 호박, 양배추, 고구마줄기, 들깨, 죽순, 생사(71) | 자, 채소류, 바나나, 파인애플, 배, 복숭아, 자몽, 한약재, 마늘, 생강(31) |
|--------------------------------------|------------------------------------|--|

\*종량세 : 부과나 무게에 따라 관세를 적용하는 세금.

국영무역 : 수입원자와 국내 도매시장 경락가격과의 차이를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

### 종축(종계 및 종란)등의 수입추전 기준 고시

농림수산부는 지난 2월28일부로 종축(종계 및 종란)등의 수입추천기준고시(축영 51530-53)를 축산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고시하였으며,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1. 종계 및 종란

##### 가. 종계 및 종란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에서 시행하는 닭경제능력검정을 받아 그 성적이 인정된 계종으로써

○수출국 또는 수출육종회사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가 첨부된 것

○수입추천을 받을 수 있는 계종은 다음과 같다. 단,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닭 경제능력검정을 받고자 수입하는 종란은 계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산란계 : 하이라인 백색, 하이라인 갈색, 이사브라운, 바브록, 닉칙백색, 세이버스타크로스 579, 데칼브와렌, 하이섹스갈색, 로만백색, 로만갈색, 아바에이카브라운, 와렌엑셀, 사이로, 데칼브브라운, 바브록B-300, 바브록B-380, 테트라하코, 테트라SL

—**육용계** : 하이브로, 인디안리버, 하바드, 아바에이카, 로스, 코브, 피터슨, 블렉템플, 베데트, 세이버스타브로, 로만, 에이비안, 타툼, 세이버레드브로, 싸쏘 431, 싸쏘 551, 하이와이

#### 나. 기타

◦ 상기계종외에 추천기준 고시 이후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의 닦 경제능력검정을 받아 성적이 인정된 계종에 대하여는 대한양계협회의 확인을 받아 수입추천 할 수 있음.

###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강화키로

국립농산물검사소는 지난 3월3일부로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94. 2. 5 농림수산부 고시로 국립농산물검사소가 농산물 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판품을 조사하거나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가공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 서류, 물품 등을 검사하게 된다.

원산지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및 위반시 벌칙 등의 원산지표시 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원산지표시제도 내용

첫째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또는 생산지를 표시토록 하므로서, 소비자에게 농산물구매시 폭넓은 선택기회를 부여하여 공정 원활한 거래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둘째, 대상농산물은 아래와 같다.(법 시행령 제38조)

◦ 수입농산물은 수입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곡류, 과실류, 채소류, 육류, 버섯류, 한약재 등 HS 4단위 178개 품목이 해당된다.

◦ 국내산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대상품목을 지정하여 고시 할 예정이다.

셋째 한글, 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39조)

수입농산물은 생산지 또는 제조국의 국명을, 국내산은 생산지·군명을 최종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독 할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게 한글, 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넷째, 원산지표시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 수입 농산물(농림수산부 고시)

◦ 통관된 상태 그대로 유통되는 경우

    통관시의 표시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 통관후 재 포장하여 유통되는 경우

    —활자의 크기는 포장의 크기에 일맞게 하여야 한다.

    —표시위치는 포장전면 좌측상단에 표시는 원칙으로 한다.

    —색도는 포장지 바탕색과 구별 할 수 있는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포장지에 직접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랩포장·그물망 포장 등 불가피 할

경우에 한하여 스키터·꼬리표 부착도 허용한다.

○ 통관된 후 재포장하지 않고 날개 또는 산물로 유통되는 경우

— 날개 판매품은 현품에 스티커부착, 용기판매품은 용기에 직접표시 또는 뜬말표시, 진열판매품은 진열대에 판매표시판을 설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국산농산물(법 시행규칙 제52조)

○ 원산지표시 방법은 수입농산물의 표시방법과 같다.

○ 품질인증품 및 표준규격 출하농산물의 표시는 원산지표시로 간주한다.

□ 가공품(법 시행규칙 제53조)

○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정제수 및 첨가물을 제외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원료별로 그 배합비율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원료가 2가지 이하인 경우에는 그 원료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 사용원료가 3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3가지를 표시하되, 그 배합비율의 합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50% 이상이 되도록 원료의 가지수를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특정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앞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의 함량순위에 불구하고, 그 특정성분의 원료를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 국산원료는 “국산”이라 표시하되, 가공업자의 필요에 따라 지역명을 표시할 수 있다.

○ 수입원료는 “생산국명”을 표시하되, 생산국명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산”이라 표시할 수 있다.

○ 동일원료로 국산과 수입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국산과 수입원료를 함량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위반자는 처벌을 받는다.(법 제22조 및 제26조)

□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 돈육 및 양계산물 수급조절사업에 1백억원, 92억5천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농림수산부는 ’94년도 돈육 및 양계산물 수급조절사업에 축발기금에서 1백억원과 92억5천만원(육계 58억원, 계란 34억5천만원)을 생산자 단체에게 년3~5% 용자조건으로 각각 지원키로 했다.

## ’94년도 한국형 축산시범 예정지구에 대략 17억원 지원키로

농림수산부는 ’93년도 한국형 축산시범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된 전북 무주군 설천지구와 경북 양양군 일월지구에 개소당 5~10호 내외로 단지를 조성키로함에 따라 올해 16억8천5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 축협 새조합장 선출

최근 전북 강진축협을 비롯하여 4개 축협 새조합장이 지난달부로 선출되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북 강진축협 : 김현양 조합장
- 완산나협 : 오현복 조합장
- 전남 합평축협 : 안병호 조합장
- 경기도 용인축협 : 홍재구 조합장

## 전업농육성자금 3천3백여억원 지원 키로

농림수산부는 전업농육성 목표를 오는 2001년까지 한우의 경우 1만8천호, 젖소 1만호, 돼지 5천호, 닭 2천1백호 등 모두 3만5천1백호로 정하고, 올해 한우부문에 1천4백48억원, 젖소 6백74억원, 돼지 7백77억원, 닭 4백39억원 등 총 3천3백3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 한국가금학회

### 1994년도 춘계 심포지움 개최예정

한국가금학회(회장 한성욱)가 주최하는 '94년도 춘계 심포지움이 오는 4월15일부터 16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공주 반포면 동학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될 심포지움은 “세계수준의 닭고기 생산전략”이란 주제아래 육계의 사양관리에서부터 질병, 위생, 영양, 사육시설, 환경, 가공분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농림수산부 김경남 축산경영과장이 참석하여 “육계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다.

## 서울·경기양계조합

### 계란가공공장 및 냉동비축창고 개점식



서울·경기양계조합(조합장 강희구)은 지난 29일 관련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란가공공장 및 냉동비축창고 개점식을 가졌다. 전평 287평에 저장능력 1,108톤인 냉동비축창고의 준공과 함께 1일 계란처리능력이 56만 개로 계란의 수급조절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신문사

### 심포지움 개최예정

축산신문사(대표 윤봉중)는 오는 4월 13일 축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기축분뇨 처리방안 모색”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축산정책차원의 처리대책, 기축분뇨의 자원화 방안,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실제효용사례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